

환경제품과 환경마크제도의 연계성 확보 방안

조윤주, 전숙진
(아태환경경영연구원 연구원)

1.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제품

전지구적인 환경의 악화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각계의 움직임이 지역적, 세계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물질적 풍요에 기초한 대량소비사회가 환경문제라는 폐해를 발생시켰다는 인식하에 환경문제를 소비문제로 보는 시각이 점차 확대되어 [사회·생태학적인 균형과 인간복지의 지향]이라는 보다 높은 차원의 소비자주의의 실천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환경(녹색)소비자주의 운동이 전개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소비생활의 목표를 물질적 풍요나 편리성보다는 환경보전과 생태계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공해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환경제품)을 소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는 것으로써 추세는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다음 세대에 까지 온전히 계승함을 전제로 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이념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제품을 비롯하여 정부 정책, 기업경영, 각종 행사 등에서 [환경친화적인], [그린], [생태적] 등 환경과 관련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는 대상의 환경친화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이나 오히려 용어에 대한 혼돈과 불신을 가져오는 역효과가 생기기도 한다.

생산자로서 기업의 경우 기존의 법규제대응의 사후 처리방식에서 벗어나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향상시켜 환경제품으로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제품전략으로

삼고자 한다. 그러나 아직 환경친화적이라는 것의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환경제품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기준의 모호성과 정보부족으로 환경제품의 선택에 혼돈을 느낀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환경제품에 대한 요건을 정립하여 두고 이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3자가 입증하여 제품에 표시토록 함으로써 환경제품의 개발과 소비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환경마크(라벨링)제도이나 아직 온전한 환경제품임을 입증시키는 데는 미흡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환경제품의 요건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다. 제품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환경제품의 개념은 분명하게 정의될 수 있다. 제품의 다양성이 생물학적 다양성의 손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료취득-생산-포장-유통-소비-폐기 등으로 이어지는 제품의 전과정에서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을 최소화하여 사람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적게 미치는 제품]을 환경제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자의 환경제품의 개발목표는 개발단계부터 제품 전과정의 환경영향을 최소화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지구온난화원인물질인 프레온가스나 CO₂ 발생원인의 회피, 유해물질 사용억제, 에너지효율 향상, 개보수 용이, 재활용, 장수명화, 포장간소화, 투입물질의 최소화, 운송거리의 최소화, 인체안전성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2. 환경제품관련 정책 동향

환경문제의 확산에 따라 개별 국가 및 국제기구의 환경정책 및 환경관련법이 지속적으로 확대강화되고 있다. 나라마다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환경정책의 목표를 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원인자에 대한 책임부담, 기업의 환경개선상황에 대한 정보공개 등에 두고 있다.

환경제품과 관련한 국내의 정책은 유해물질 사용규제, 에너지 효율증진, 제품정보로서의 라벨링, 특정물질의 할당, 오염물질 배출규제, 제품의 처리·사용·시험방법에 대한 규제 등이 있으며 비교적 최근의 추세로서 제조자 회수책임, 전과정평가, 재활용을 향상, 환경친화적 포장, 폐기제품의 회수와 처리를 위한 폐기물예치금·부담금 등 경제적 수단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기업에 대한 환경규제가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에서 제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변화됨을 의미한다. 특히 환경마크(라벨링)는 직접적으로 제품의 환경친화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므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25개국 이상이 환경마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정부 및 민간단체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생산과 소비체제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마크품목을 늘리고자 하고 있다. 또한 환경제품의 개발이 소비재에서 점차 국제거래에 점유율이 높은 가전제품, 자동차 등 내구재로 확대되고 있다.

3. 환경마크부여 대상으로서 환경제품

환경에 부담이 적은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업자나 소비자가 환경제품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구체적인 생산과 구매단계에서 환경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요건)와 함께 관련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마크제도는 이러한 제품에 관한 환경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제품등의 환경속성에 관한 정보를 라벨형태로 표시하여 제품을 차별화하고 제품의 [환경에 영향이 적은 것]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환경보전을 배려한 소비행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제품의 개발동기를 부여하는 등의 환경보전에 공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제품의 개발과 환경마크제도는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환경마크 부여대상은 환경친화적인 제품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4. 환경마크에 대한 국제기구의 논의

국제적 무역거래에서 제품의 경쟁요소로서 환경성의 제고는 환경마크제도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국제기구들에서는 제품의 환경친화성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의 적용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중이다.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의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 CTE)」에서는 환경마크를 비롯한 각종 환경조치의 투명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특히 환경마크(라벨링)제도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Technical Barrier to Trade : TBT) 적용 여부에 대해 논란을 벌이고 있다.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 LCA)에 기초한 환경마크제도가 환경보호를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는 것은 하지만 시장접근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차별적인 무역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공감하지만, 이를 위하여 TBT협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선진국가 개도국간에 입장대립을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에서는 환경관련 문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하고, 다른 기관에서의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적절한 지침

리포트

이나 정책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무역과 환경 전문가합동회의」에서 환경마크(라벨링)제도와 관련된 제품의 전과정평가(LCA)와 제조공정 및 생산방식(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 PPMs)등과 같은 문제들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UN무역개발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Trade and Development : UNCTAD)는 「무역, 환경 및 개발에 관한 특별작업반(Adhoc Working Group on Trade,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환경마크제도가 무역(특히, 개도국의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의를 행하고 있다.

최근 환경관련 국제규격시리즈의 추진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ISO)에서는 각국에서 상이하게 시행되고 있는 환경마크제도를 조화(혹은 통일)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환경마크(라벨링)제도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절차 및 원칙을 설정하기 위해 환경경영표준화국제규격인 ISO 14000시리즈 추진담당 환경기술위원회

207(Technical Committee : TC) 산하의 제3분과 위원회(Subcommittee 3)에서 환경마크(라벨링)제도와 관련된 국제규격을 논의하고 있다.

ISO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 규정이나 세계 각국이 이를 자국법으로 채택할 경우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실제로 ISO 14000 표준화에 참여한 주요 국가들이 자국의 표준으로 채택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

ISO 14020은 모든 환경성주장 및 환경마크인증제도의 총론으로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원칙이므로 분쟁 발생시 판별의 기초가 될 것이며, ISO 14021 ~ 14023은 기업의 자체 환경성 주장에 관한 표준인 공정거래법상의 환경광고지침의 형태로 세계 주요 국가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ISO 14024는 자의성이 큰 각국의 환경마크제도가 잠재적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현실이므로 국제규격이 발효될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불공정무역관행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표 1. ISO 14020 시리즈 규격 개발 현황

분과위원회	번호	명칭	발효시기
SC 3	14020	환경라벨링과 선언 - 환경라벨링 기본원칙 (EL & Declarations - Basic Principles for all EL)	'97
	14021	환경라벨링과 선언 - 환경성 자기주장 - 용어 및 정의 (EL & Declarations - Self Declaration Environmental Claim - Terms & Definitions)	'97
	14022	환경라벨링과 선언 - 환경성 자기주장 - 심벌 (EL & Declarations - Self Declaration Environmental Claims - Symbols)	'97
	14023	환경라벨링과 선언 - 환경성 자기주장 - 시험과 검증방법론 (EL & Declarations - Self Declaration Environmental Claims - Testing and Verification Methodologies)	'97
	14024	환경라벨링과 선언 - 환경라벨타입 I (EL & Declarations - EL Type I - Guiding Principles & Procedures)	'97
	14025	환경라벨링과 선언 - 환경라벨타입 III (EL & Declarations - EL Type III - Guiding Principles & Procedures)	'97

5. 환경마크제도의 주요 현안

환경마크제도는 자발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환경마크를 획득하여 비가격요소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지, 가격경쟁력에 초점을 두어 환경마크를 획득하지 않고 판매할 것인지는 기업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러나 환경마크가 구매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때는 강제적인 규정과 유사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어 특정시장에서 환경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의 경쟁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미 포장이나 제조자 회수 등 제품의 환경친화성에 대한 요건으로 인하여 무역거래의 장애가 생긴 사례도 있으며, 환경마크제도가 매우 강력한 마케팅 도구로 고려되고 있다. 북유럽지역의 경우 Nordic Swan이 부착되지 않은 식기 세척기용 세제는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한다.

환경마크부여 대상품목의 범주, 환경마크 부여기준, 허용규제치 등이 자국시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이는 제품제조에 사용된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생산국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특정 지표들로 제품의 전과정이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무역효과가 우려되며 선진국의 환경마크를 획득하기 위해 개도국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환경마크제도의 잠재적인 무역장벽효과를 완화·제거하기 위해서는 환경마크제도의 준비 및 시행단계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모든 환경마크가 PPMs 관련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기준이 사용될 경우 교역상대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한 방법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마크제도가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의 환경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PPMs관련 기준이 생산국 국내의 환경여건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동등성과 이러한 동등성에 근거한 환경마크제도간 상호인정 방법도 정립되어야 한다. 이상 투명성 확보, PPMs 관련기준, 동등성 및 상호인정 등의 문제가

환경마크(라벨링)의 현안이 되고 있다.

6. 환경제품의 평가 방법으로 전과정 평가의 활용

경제사회활동에 따른 환경부하의 대부분은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제품의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제품에 대한 전과정 평가는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판단하는 효과적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개발을 위해서는 전과정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진다.

이미 일부 선진기업에서는 자체 개발한 전과정 평가 기법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환경경영체제의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제품개발 프로세스내로 적용하여 직접적으로 폐기물감소, 에너지효율향상, 오염처리비용의 절감 등의 효과와 함께 객관적인 정보의 축적을 통해 대내외 의사소통에도 기여하고 있다.

현재 ISO 14000시리즈로 진행중인 전과정 평가(ISO 14040시리즈)는 환경제품의 척도로 사용될 ISO 14020시리즈의 환경마크(라벨링) 대상제품의 선정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환경마크 부여기준도 제품의 전과정 평가를 기초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WTO의 무역과 환경위원회에서도 환경마크로 야기될 수 있는 차별화 및 무역왜곡현상을 전과정 평가에 기초한 환경마크 프로그램의 개발로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OECD에서는 전과정 평가 방법론의 조화, 상용성, 상호인정성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무역거래국간의 환경마크프로그램이 일정 조건을 서로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환경마크 부여를 위한 제품평가기준으로서 전과정 평가는 제품의 환경부하가 실질적으로 적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광범위하고

표 2. 제품의 전과정 단계 환경부하 체크표(예)

환경성 평가 항목	전과정 단계					
	자원채취	제조	유통	사용	폐기	재생
자원의 소비상황	1	10	19	28	37	46
지구온난화 영향물질의 배출상황	2	11	20	29	38	47
오존층 파괴물질의 배출상황	3	12	21	30	39	48
생태계파괴의 상황	4	13	22	31	40	49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상황	5	14	23	32	41	50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상황	6	15	24	33	42	51
폐기물배출·폐기 등의 상황	7	16	25	34	43	52
유해물질 등의 사용·배출상황	8	17	26	35	44	53
기타 중요한 환경부하 등의 상황	9	18	27	36	45	54

도 다양한 기준에 근거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현재까지는 일부분의 환경측면이나 사용단계 또는 폐기단계와 관련된 특정부분만을 언급하고 있다.

기존의 개별 국가의 환경마크제도에서 과학적 근거보다는 경제성, 정치성을 에 기초한 여러 가정에 근거하여 지역적인 관점으로 부여기준이 제정된 것으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전과정 평가가 그 기대효율을 하기 위해서는 기법의 정착, 기법적용상의 투명성, 관련 자료의 축적,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하여 정부, 산업계, 개별 기업, 학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7. 글을 마치며

제품에 관련된 환경규제의 강화와 환경마크에 관한 ISO규격의 발효에 따라 국내의 시장에서 제품의 경쟁력은 기존의 품질, 기능, 가격 등의 전통적인 요소에 환경요소를 추가하는 것이 당연한 대세로 되었다. 따라서 환경시대의 제품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과정 평가등의 환경성 평가방법을 적극적으로 개

발하고, 이에 따른 기술역량을 축적하는 것이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국내 환경마크제도도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전과정 평가를 기초로 한 환경마크 부여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참고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
무역과 환경의 연계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6)
주요국의 환경마크제도
-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 (1997)
유럽기업의 미래지향적 환경경영 추진 전략
- 아태환경경영연구원 (1997)
환경제품의 개발동향과 대응방안